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0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11839 취득세 등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제 1 심 판 결	[redacted]법원 2020. 6. 17. 선고 2019구합101365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2. 10.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0

735,467,060원(가산세 포함)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제1심 공동피고 예산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 제3쪽 밑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1)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0

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9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 제3쪽 밑에서 제3행의 "1)"은 "2)"로, "18호증"은 "24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 제4쪽 제7행의 "종결된 사실이"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종결된 사실, 그 이후 원고는 2019. 3.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 신축을 완료한 후 2020. 5. 6. 피고에게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여 2020. 7. 1.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 제4쪽 제8행의 "2)"는 "3)"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2행의 "불과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2013. 7.경에야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장 신축을 위한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급업체인 C의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고(그 공사 중단 당시 기성률은 29.27%이다), 소송까지 계속하다가 결국 2017. 3.경 조정이 성립되어 분쟁이 종료되었음에도 한참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9. 3.경에야 새로운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0

개하여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인 2020. 5.경에야 공장신축공사를 완료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잔여 공사를 진행하여 줄 새로운 건설업체를 물색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결국 잔여 공사를 할 건설업체를 구하지 못해 D을 설립하여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충분히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외부적 또는 내부적 사정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⑥ 이 사건 토지는 49,283.3㎡인데 그 중 위와 같이 공장이 실제 신축된 부분은 27,368.17㎡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약 22,000㎡)은 여전히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당초의 취득세 등 감면의 취지대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전체적으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